

담당부서 :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 | | |
|----------|---------------------------------|-----------|
| 주택정책과장 | 김선수 | 2133-7010 |
| 청년월세지원팀장 | 이승현 | 2133-7701 |
| 담 당 자 | 김미연 | 2133-7705 |
| 관련 홈페이지 | housing.seoul.go.kr (서울주거포털) | |

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 5쪽

서울시, 20만원씩 10개월 간 지원 '청년월세' 2만명 모집... 28일부터 신청

- 6.28(화)~7.7(목) '서울주거포털'...만19~39세 청년 1인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 올해부터 연령기준 신청일자 기준→ 사업연도 기준으로 완화해 자격 충족 대상자 확대
- 더 힘든 청년에 기회... 소득구간 나눠 선정, 재산 1억·2,500만원 이상 차량소유자 등 제외

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장 10개월 간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를 올해 2만 명에게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28일(화)부터 열흘 간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서 신청을 받는다.

- 신청은 6.28(화) 오전 10시~7.7.(목) 18시까지며, 세부적인 지원기준과 구비서류는 서울주거포털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서울주거포털 1:1 온라인 상담창구, 다산콜센터(☎02-120),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1600-3456)로 연락하면 된다.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2~2003년) 청년 1인 가구 중에서 기

준중위소득 150% 이하가 대상이다. 최종 지원대상은 심사를 거쳐 8월 말 선정·발표되며, 실제 지원은 10월 시작된다.

- 특히 올해는 신청 가능한 나이를 ‘신청일 기준’이 아닌 ‘연도 기준’으로 완화해 신청일 전에 생일이 지났거나 생일이 되지 않아 신청자격에서 탈락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없도록 했다.
- 주민등록등본 상 만 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주민등록 상 2인 가구로 세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 사업자와 개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각각 신청이 가능하다.
- 청년월세는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지원되며, 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 등재되어 있어야 하고 부모·형제, 친구 등 타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신청 불가하다.
- 다만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에서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2.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 또한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2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세전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일 경우에는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022년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

- 직장가입자 102,842원, 지역가입자 77,067원('22년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참고)

- 서울시는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하며,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한다.
- 시는 실질적으로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낮은 구간(보증금 1천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에 많은 인원을 배정(1만5천 명, 75%)했다고 설명했다.

|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명) |
|----|---|---------|---------|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 120% 이하 | 9,000 |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 120% 이하 | 6,000 |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20% 이하 | 3,000 |
| 4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 150% 이하 | 2,000 |

- 일반재산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공공 임대주택 거주 청년 등은 제외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나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
- 일반재산에는 토지 및 건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이 해당된다.
- 서울형 주택바우처, 각종 공공 전세대출 및 이자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은 중복 지원 가능하다.

- 서울시는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적절성 여부를 조사하고 8월 말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할 예정이며, 오는 10월 초부터 격월로 월세를 지원한다. 단, 올해 지원분은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3개월분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 지원금을 받는 도중에 타 지역 전출, 월세 없는 전세로 이주, 공공 임대 지원을 받게 되면 지원은 중지된다.

- 아울러, 서울시는 코로나19 등으로 최근 주거비 부담이 더 커진 주거위기 청년을 돕고자 국비를 지원받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도 시행할 예정이다. 8월부터 1년 간 수시로 신청받으며, 가장 12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원 씩 지원한다.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사업과 대상 연령과 소득, 재산 등 신청요건에 차이가 있으므로 8월 중 보건복지부 복지포털 '복지로'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실제로 월세 지원이 꼭 필요한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는 연령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자도 확대했다"며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코로나19 이후 생활비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을 청년들에게 단비 같은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붙임1. 청년월세 홍보용 이미지

포스터

서울특별시

2022 꿈꾸는 청년을 위한 주거 안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청년이라면 누구나 '주거 고민 없이 즐거운 미래'를 꿈꿀 수 있어야 합니다!

1

**청년주거독립을 위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지원기준
만 19~39세 청년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접수
2022. 6. 28. (화) 10:00 ~ 7. 7. (목) 18:00 마감
온라인: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 오프라인 방문신청 불가

지원내용
월 20만 원 이하 지원(최대 10개월/200만 원)

관련문의
서울주거포털 (housing.seoul.go.kr)



서울주거포털
바로가기

2

**청년주거안정을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기준
만 19~34세 부모와 별도거주하는 청년가구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신청접수
2022.8.~2023. 8. 1년간 상시 신청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
오프라인: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지원내용
월 20만 원 이하 지원(최대 12개월/240만 원)

관련문의
복지로 (bokjiro.go.kr)



복지로
바로가기